

의안번호	2207323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4.
추계번호	25A0113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9조제2항 (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 조율 등)	보조금의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현충시 설의 건립 및 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 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9조제2항 (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 조율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도
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2]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
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
 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사업의 건립 및 관리에
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사업수행 방식의 변경(전액 지방비 방식
에서 국고보조 방식) 및 추가적인 현충시설 건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
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사업의 내용 및 규모, 국가 보조금의 지급 수준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- 개정안의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비용추계 기간의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건립 계획과 소요예산, 국비:지방비 비율, 현충시설 종류별 평균 관리비용 통계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2025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유 현충시설은 총 1,203개소이며, 탑·비석의 전체의 74.5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탑·비석, 동상 및 조형물과 같은 현충시설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공원 및 녹지 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등 별도 관리비용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, 사당 및 생가와 같이 기존 시설물을 현충시설로 지정한 경우 별도 건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

[표 1] 2025년 현재 소유주체별 현충시설 현황

(단위: 개소)

소유주체별	현충시설 종류							
	계	기념관	동상	탑·비석	사당	생가	조형물	기 타
계	2,331	108	169	1,706	58	47	56	187
지방자치단체	1,203	79	69	896	21	26	26	86
군부대	133	4	19	93	—	—	9	8
기념사업회	380	6	27	319	8	4	6	10
학교	134	6	27	81	—	—	7	13
문중대표	130	2	2	97	13	12	—	4
기타	351	11	25	220	16	5	8	66

자료: 국가보훈부(현충시설관리과) 제출자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